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제46조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중선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2.2.1>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2.2.1>

- ⑤ 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2.1><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2.2.1>
- ⑥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2.2.1>
-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2.1> <제6항에서 이동 2012.2.1>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2.1]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2.1]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3.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12.2.1><중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2.2.1>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개정 2009.5.21, 2012.2.1><제2항에서 이동, 중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2.2.1>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5.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08.3.21, 2012.2.1><제3항에서 이동, 중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2.2.1>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2012.2.1><제4항에서 이동 2012.2.1>

- ⑥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2.2.1>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②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

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2.1>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④ 환경부장관은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

제64조 삭제<2012.2.1>

제65조 삭제<2012.2.1>

제66조 삭제<2012.2.1>

제67조 삭제<2012.2.1>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2.1]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신설 2012.2.1>
-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2.1>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

제71조 삭제<2012.2.1>

제72조 삭제<2012.2.1>

제73조 삭제<2012.2.1>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개정 2012.2.1>) 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2.2.1>

- 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2.2.1>
- 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
- 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2.1>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사업자[전문개정 2012.2.1]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2.1>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13, 2012.2.1>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삭제<2010.1.13>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1>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1>

1.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2.2.1>

1.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 3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합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7. 삭제<2012.2.1>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전문개정 2012.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09.7.14] [시행일: 2015.1.1] 제62조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본조신설 2009.7.14]

[별표 17] <개정 2012.2.3>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제62조 관련)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종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8.0g/km 이하	1.5g/km 이하	2.1g/km 이하	0g/l 주행	4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1996년 12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	2.11(4.5) g/km 이하	0.62(1.25) g/km 이하	0.25(0.5) 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나	4.0g/km 이하	1.0g/km 이하	0.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62g/km 이하	0.2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승용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11(2.75) g/km 이하	0.40(0.62) g/km 이하	0.25(0.3) 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6.21g/km 이하	1.43g/km 이하	0.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	6.21g/km 이하	0.75g/km 이하	0.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나		6.21g/km 이하	1.06g/km 이하	0.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6.21g/km 이하	1.43g/km 이하	0.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D-13 모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	6.21g/km 이하	0.75g/km 이하	0.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나	6.21g/km 이하	1.06g/km 이하	0.5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중량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33.5g/kWh 이하	11.4g/kWh 이하	1.3g/kWh 이하	0g/l 주행	-	

※ 비 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 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 란은 위 표의 비교 2. 외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4. 알코올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를 같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5. 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 란은 경승용차(코치·밴형 등 주로 화물수송용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적용하고, () 안은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1996년 9월 14일)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승용차에 적용한다.
6. 경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 란은 비교 5. 외의 경자동차에 적용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1년 2월 2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승용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 위 표의 적용기간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 자동차의 적용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천연가스자동차의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2.11) g/km 이하	0.25(0.62) g/km 이하	0.16(0.25) 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승용자동차	가	2.11(2.75) g/km 이하	0.25(0.44) g/km 이하	0.16(0.25) 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1(3.11) g/km 이하	0.37(0.62) g/km 이하	0.19(0.29) 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가	2.75g/km 이하	0.25g/km 이하	0.24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나	3.11g/km 이하	0.43g/km 이하	0.29g/km 이하	0g/l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중량자동차		33.5g/kWh 이하	5.5g/kWh 이하	1.3g/kWh 이하	0g/l 주행	-	0.01g/kWh 이하	

※ 비 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같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의 '가' 란은 법 제50조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라 한다)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까지의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에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6. 소형화물자동차의 '가' 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중량(이하 "시험중량"이라 한다)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 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7.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의 규정 중 1999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2.11) g/km 이하	0.25(0.62) g/km 이하	0.16(0.25) 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승용자동차	가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16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나	2.61g/km 이하	0.37g/km 이하	0.19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다목적자동차	가	2.34g/km 이하	0.39g/km 이하	0.21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나	2.64g/km 이하	0.43g/km 이하	0.25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중형자동차	가	27.5g/km 이하	0.25g/km 이하	0.24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나	3.11g/km 이하	0.43g/km 이하	0.29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대형자동차	33.5g/kWH 이하	5.5g/kWH 이하	1.3g/kWH 이하	0g/1 주행	-	0.01g/kWH 이하		D-13 모드

※ 비 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경자동차·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천연가스버스만 해당한다)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에 블로바이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같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하되 그 배출허용기준은 0.009g/km 이하로 한다.
4. 경자동차 중 ()안의 기준은 코치·밴·트럭 및 특장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가' 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가스사용자동차의 경우 12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6. 중형자동차의 '가' 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 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라. 2002년 7월 이후
1) 휘발유 자동차

차 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 화 수 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승용 및 화물 자동차	승용1	가	2.11g/km 이하	0.12g/km 이하	0.047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1g/km 이하	0.19g/km 이하	0.056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화물 1	2.11g/km 이하	0.12g/km 이하	0.047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승용 2	2.11g/km 이하	0.19g/km 이하	0.056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승용3· 화물2	2.73g/km 이하	0.25g/km 이하	0.062g/km 이하	0g/1 주행	1.5g/테스트 이하	0.07g/km 이하		
	승용4· 화물3	4.0g/km 이하	3.5g/km 이하	0.9g/km 이하	0g/1 주행	-	-		D-13 모드

※ 비 고

1. 휘발유 자동차는 알코올과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탄화수소에 같음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승용1 및 승용2의 저온(-6.7℃) 시동 시에는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6.3g/km 이하로 한다.
4.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5.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 및 화물자동차 중 승용1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승용1의 배출허용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3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한다.

구 분	적용기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후
출고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100%

7. 승용1의 '가' 란은 제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1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 다음의 표를 적용한다.
8. 제7호의 적용기간 난 중 ①란 및 ②의 '가' 란은 각각 5년 또는 80,000km까지 적용하고, ②의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① 2003년 2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19g/km 이하	0.062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2.11g/km 이하	0.19g/km 이하	0.062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②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가 2.61g/km 이하	0.078g/km 이하	0.078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나 2.61g/km 이하	0.078g/km 이하	0.078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9. 경자동차·승용1·화물1·승용2·승용3 및 화물2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그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가스자동차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승용 및 화물 자동차	승용1	가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1g/km 이하	0.37g/km 이하	0.097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화물1	2.11g/km 이하	0.25g/km 이하	0.078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승용2	가	2.34g/km 이하	0.37g/km 이하	0.097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2.61g/km 이하	0.43g/km 이하	0.10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승용3· 화물2	2.73g/km 이하	0.43g/km 이하	0.10g/km 이하	0g/1 주행	1.5g/테스트 이하		0.07g/kWH 이하	
승용4· 화물3	4.0(0.4)g/kWH 이하	3.5g/kWH 이하	0.9(0.2) g/kWH 이하	0g/1 주행	-	-		D-13 모드	

※ 비 고

1. 가스자동차는 가스와 알코올을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용1의 '가'란 및 승용2의 '가'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12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승용1의 '나'란 및 승용2의 '나'란은 각각 5년 또는 12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3.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4.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승용4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승용4·화물3의 () 안의 기준 중 승용4는 2004년 1월 1일부터, 화물3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6.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CVS-75 모드
소형승용·화물자동차	가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중형승용·화물자동차	가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1.50(0.4)g/kWh 이하	3.5g/kWh 이하	0.46(0.2)g/kWh 이하	0g/1주행	-	-	
	4.0g/kWh 이하	3.5g/kWh 이하	0.55g/kWh 이하	0g/1주행	-	-	D-13 모드

※ 비 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승용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3.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4.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 안의 기준은 가스자동차에 적용한다.
5.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6.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소형승용자동차 중 휘발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고, 그 해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해의 출고대수로 인정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해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6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작자별로 연간 총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 첫 해에서 3년을 유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출고비율 100%를 적용한다.

구분	적용기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출고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8.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 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합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차 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합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	2.111.06 이하	0.143g/km 이하	0.025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CVS-75 모드
	나	1.31g/km 이하	0.062g/km 이하	0.034g/km 이하	0g/1 주행	1g/테스트 이하	

9. 비고 제8호의 적용기간 내 중 '가' 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 모드를 같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11.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는 ND-13모드 또는 ETC모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13. 차량 총중량이 4톤미만인 대형승용차·화물차는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 기간은 중형승용·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바. 2009년 1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	가	2.11g/km 이하	0.031g/km 이하	0.047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9g/km 이하	CVS-75 모드
		나	2.61g/km 이하	0.044g/km 이하	0.056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11g/km 이하	
	기준 2	가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기준 3		0.625g/km 이하	0.0125g/km 이하	0.00625g/km 이하	0g/1 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기준 4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1 주행	0g/테스트 이하	0g/km 이하	
대형 승용·화물			4.0g/kWH 이하	2.0g/kWH 이하	0.55g/kWH 이하	0g/1 주행	-	-	ETC 모드

※ 비 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목록의 기준을 적용한다.
14. 경자동차,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 란은 5년 또는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 란은 5년 또는 8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기준 3에 맞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대상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 화 수 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0.625g/km 이하	0.01875 g/km 이하	0.0125 g/km 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CVS-75 모드

15. 경자동차·소형승용·소형화물·중형승용·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CVS-75 모드를 갈음하여 IM-240모드로 시험할 수 있다.
16. 삭제 <2012.2.3>
17.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기준 1을 적용한다
1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19. 제18호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교 4호의 평균값 산정 시 대상차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차량 총 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은 중형승용·화물의 기준 및 측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중형승용 화물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21. 목록의 증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바목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사. 2013년 1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가스	부로바이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기준 1	가	2.11g/km 이하	0.031g/km 이하	0.047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9g/km 이하	CVS-75 모드	
		나	2.61g/km 이하	0.044g/km 이하	0.056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11g/km 이하		
	기준 2	가	1.06g/km 이하	0.031g/km 이하	0.025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5g/km 이하		
		나	1.31g/km 이하	0.044g/km 이하	0.034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7g/km 이하		
	기준 3		0.625g/km 이하	0.0125g/km 이하	0.00625g/km 이하	0g/1 주행	1.2g/테스트 이하	0.0025g/km 이하		
	기준 4		0g/km 이하	0g/km 이하	0g/km 이하	0g/1 주행	0g/테스트 이하	0g/km 이하		
	대형 승용 · 화물		4.0g/kWh	0.40g/kWh	0.14g/kWh	0g/1	-	-		WHTC
	초대형 승용 · 화물		이하	이하	이하	주행	-	-		모드

※ 비 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는 휘발유 · 알코올 및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위 표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알콜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알콜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삭제 <2012.2.3>
4. 삭제 <2012.2.3>
5. 삭제 <2012.2.3>
6. 삭제 <2012.2.3>
7. 삭제 <2012.2.3>
8. 삭제 <2012.2.3>
9. 삭제 <2012.2.3>
10. 삭제 <2012.2.3>
11.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저온(-6.7℃) 시동 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km 이하로 한다.
12. 대형승용차 · 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 · 화물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 (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13. 대형 승용 · 화물, 초대형 승용 · 화물 자동차(가스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메탄 배출허용기준은 0.5g/kWh 이하로 한다.
14. 대형승용 · 화물 및 초대형승용 · 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5.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16.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 승용 · 화물, 초대형 승용 ·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경유사용 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종	적용기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1991년 12월 31일까지	1.5g/km 이하	0.62g/km이하	0.25g/km이하	0.08g/km이하	-	CVS-75모드
승용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900ppm 이하	IDI:450ppm이하 DI:850ppm이하	670ppm 이하	-	50% 이하	D-6 모드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62g/km 이하	0.25g/km 이하	0.12g/km 이하	-	CVS-75 모드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2.11g/km 이하	0.62g/km 이하	0.25g/km 이하	0.08g/km 이하	-	D-6 모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5g/km 이하	0.62(1.12) g/km 이하	0.25g/km 이하	0.08(0.14) g/km이하	-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IDI:450ppm이하 DI:850ppm이하	670ppm 이하	-	5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IDI:350ppm이하 DI:750ppm이하	670ppm 이하	-	40%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6.21g/km 이하	1.43g/km 이하	0.50g/km 이하	0.31(0.16) g/km이하	-	CVS-75 모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가 나	2.11g/km 이하	1.40g/km 이하	0.25g/km 이하	0.14g/km 이하	
			2.11g/km 이하	1.40(1.96)g/ km	0.50g/km 이하	0.25(0.35) g/km이하	
	중량자동차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이하 IDI:450ppm이하	670ppm 이하	-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980ppm 이하	DI:850ppm이하 IDI:350ppm이하	670ppm 이하	-	4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9g/kWH 이하	DI:750ppm이하 11.0g/kWH	1.2g/kWH 이하	0.9g/kWH 이하	3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4.9g/kWH 이하	이하 6.0(9.0)	1.2g/kWH 이하	0.25(0.5) g/kWH 이하	25% 이하	D-13 모드

※ 비 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가' 란은 시험중량(공차중량+136kg) 1.7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3.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나' 란은 비교 2. 외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4. 매연 난의 기준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5. 소형화물자동차의 적용기간 난 중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난의 입자상물질 중 () 안의 기준은 차량 총중량 2톤 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6. 중량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난 중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7. 승용자동차의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8. 소형화물자동차의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난의 적용기준 중 () 안의 적용기준은 차량 총중량 3.0톤 이상 3.5톤 미만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1.2g/km 이하	0.62(1.02) g/km 이하	0.25g/km 이하	0.05(0.11) g/km 이하		CVS-75 모드
소형 화물자동차	가	2.11g/km 이하	1.02g/km 이하	0.25g/km 이하	0.11g/km 이하		D-13 모드
	나	2.11g/km 이하	1.06g/km 이하	0.50g/km 이하	0.14g/km 이하		
중량 자동차		3.0g/kWH 이하	6.0g/kWH 이하	1.0g/kWH 이하	0.2g/kWH 이하	20% 이하	

※ 비 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중 () 안의 기준은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명 이하의 승합차에 적용한다.
- 소형화물자동차의 '가' 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 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중량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D-3)으로 한다.
- 중량자동차에 과급기(Turbo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7.0g/kWh 이하로,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0.15g/kWh 이하로 한다.
-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자동차·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의 규정 중 1999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0.5g/km 이하	0.02g/km 이하	0.01g/km 이하	0.11g/km 이하	20% 이하	CVS-75 모드
다목적 자동차		1.1g/km 이하	0.95g/km 이하	0.22g/km 이하	0.11g/km 이하	20% 이하	
중형 자동차	가	2.11g/km 이하	1.02g/km 이하	0.25g/km 이하	0.11g/km 이하	20% 이하	
	나	2.11g/km 이하	1.06g/km 이하	0.50g/km 이하	0.14g/km 이하	20% 이하	
대형 자동차	가	3.0g/kWH 이하	6.0g/kWH 이하	1.0g/kWH 이하	0.2g/kWH 이하	20% 이하	D-13 모드
	나	3.0g/kWH 이하	6.0g/kWH 이하	1.0g/kWH 이하	0.2g/kWH 이하	20% 이하	

※ 비 고

-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중형자동차의 '가' 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 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3. 대형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원동기 가동상태의 전부하 3모드 측정방법(D-3)으로 하되, 출고단계에서는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의 기준으로 하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중형자동차와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각각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대형자동차의 입자상물질 중 () 안의 기준은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5. 대형자동차의 '가' 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 란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6. 대형자동차의 '가' 란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7.0g/kwH 이하로, 입자상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0.15g/kwH 이하로 한다.

라. 2002년 7월 1일 이후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 승용 1		0.5g/km 이하	0.02g/km 이하	0.01g/km 이하	0.01g/km 이하	15% 이하	CVS-75 모드
화물 1		0.8g/km 이하	0.65g/km 이하	0.07g/km 이하	0.07g/km 이하	15% 이하	
승용 2	가	0.95g/km 이하	0.65g/km 이하	0.208g/km 이하	0.07g/km 이하	15% 이하	
	나	0.95g/km 이하	0.75g/km 이하	0.08g/km 이하	0.09g/km 이하	15% 이하	
승용 3 · 화물 2		0.95g/km 이하	0.78g/km 이하	0.08g/km 이하	0.10g/km 이하	15% 이하	
승용 4 · 화물 3		2.1g/kwH 이하	5.0g/kwH 이하	0.66g/kwH 이하	0.10g/kwH 이하	15% 이하 및 K = 0.8m-1	D-13 모드

※ 비 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승용2의 '가' 란은 시험중량이 1.7톤 이하인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 란은 시험중량이 1.7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3.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2 · 승용3 · 화물1 및 화물2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4 및 화물3은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4. 200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경자동차 · 승용1 및 2004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승용2의 '가' 란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차종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 승용 1		0.64g/km	0.50g/km	0.56g/km	0.05g/km	15%	ECE-15 및
승용 2	가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EUDC 모드

5. 매연의 측정은 출고 시의 기준으로 하되,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고 과급기(Turbo 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용4 및 화물3의 K수치는 제작사의 기준으로 하되,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 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6. 2004년 7월 1일부터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l 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7.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화물3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차종	구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0.50g/km 이하	0.25g/km 이하	0.30g/km 이하	0.025g/km 이하	10%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 화물차	RW ≤ 1,305kg	0.50g/km 이하	0.25g/km 이하	0.30g/km 이하	0.05g/km 이하	10% 이하	
	1,305kg < RW ≤ 1,760kg	0.63g/km 이하	0.33g/km 이하	0.39g/km 이하	0.04g/km 이하	10% 이하	
	RW > 1,760kg	0.74g/km 이하	0.39g/km 이하	0.46g/km 이하	0.06g/km 이하	10% 이하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0g/km 이하	3.5g/km 이하	0.46g/km 이하	0.02g/km 이하	10% 이하 K = 0.5m-1	D-13 모드
		4.0g/km 이하	3.5g/km 이하	0.55g/km 이하	0.03g/km 이하	-	ETC 모드

※ 비 고

-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소형승용 중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 블로바이(Blow-by)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l 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 위 표의 매연 측정은 출고 시를 기준으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으로 하며,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 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한다.
-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 2006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대형 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화물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화물차 및 초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원동기 전부하시험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42	2.26	95	1.535	150	1.225
45	2.19	100	1.495	155	1.205
50	2.08	105	1.465	160	1.19
55	1.985	110	1.425	165	1.17
60	1.90	115	1.395	170	1.155
65	1.84	120	1.37	175	1.014
70	1.775	125	1.345	180	1.125
75	1.72	130	1.32	185	1.11
80	1.665	135	1.30	190	1.095
85	1.62	140	1.27	195	1.08
90	1.575	145	1.25	200	1.065

바. 2009년 9월 1일 이후

차종	구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0.50g/km	0.18g/km	0.23g/km	0.005g/km	-	ECE-15 및 EUDC 모드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 중형화물차	RW≤ 1,305kg	0.50g/km	0.18g/km	0.23g/km	0.005g/km	-		
	1,305kg< RW≤1,760kg	0.63g/km	0.235g/km	0.295g/km	0.005g/km	-		
	RW> 1,760kg	0.74g/km	0.28g/km	0.35g/km	0.005g/km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승용차·화물차		1.50g/kWh	2.0g/kWh	0.46g/kWh	0.02g/kWh	K = 0.5m ⁻¹		ND-13 모드
		이하	이하	이하	이하			ETC 모드
		4.0g/kWh	2.0g/kWh	0.55g/kWh	0.03g/kWh	-		ETC 모드

※ 비 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우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차 중 시험중량이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자동차는 소형화물차 및 중형승용차·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5.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중량 2톤을 초과하고 7인승 이상인 소형승용차와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형화물차, 중형승용차·화물차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09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는 위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ND-13모드, ETC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ND-13모드는 THC로 측정하고 ETC 모드는 NMHC로 측정한다.
9.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유량(ℓ/sec)	K수치(m-1)
42	2.26	95	1.535	150	1.225
45	2.19	100	1.495	155	1.205
50	2.08	105	1.465	160	1.19
55	1.985	110	1.425	165	1.17
60	1.90	115	1.395	170	1.155
65	1.84	120	1.37	175	1.014
70	1.775	125	1.345	180	1.125
75	1.72	130	1.32	185	1.11
80	1.665	135	1.30	190	1.095
85	1.62	140	1.27	195	1.08

10. 위 표의 매연기준의 K수치는 제작 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매연측정방법(ELR)으로 측정하며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11.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자동차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은 6×10^{11} #/km 이하로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종	구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연	측정방법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0.5g/km	0.08g/km	0.17g/km	0.0045g/km	6×10^{11}	ECE-15 및 EUDC 모드	
		이하	이하	이하	이하	#/km 이하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RW ≤ 1,305kg	0.5g/km	0.08g/km	0.17g/km	0.0045g/km	6×10^{11}		
	1,305kg < RW ≤ 1,760kg	0.63g/km	0.105g/km	0.195g/km	0.0045g/km	6×10^{11}		
	RW > 1,760kg	0.74g/km	0.125g/km	0.215g/km	0.0045g/km	6×10^{11}		
대형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1.5g/kWh	0.40g/kWh	0.13g/kWh	0.01g/kWh	8×10^{11}		WHSC
		이하	이하	이하	이하	#/kWh 이하		
		4.0g/kWh	0.46g/kWh	0.16g/kWh	0.01g/kWh	6×10^{11}		WHTC
		이하	이하	이하	이하	#/kWh 이하		

※ 비 고

-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로 한다.

3.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승용차 및 대형화물차의 경우, 다음 표의 시험중량과 측정방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차종의 기준을 적용한다.

시험중량	RW≤2,380kg	2,380kg<RW≤2,840kg	RW>2,840kg
측정방법	ECE-15 및 EUDC 모드	제작자가 선택	WHSC, WHTC

4. 블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보차저, 펌프, 블로어 및 슈퍼차저가 장착된 원동기는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5. 경자동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킬로그램 미만인 소형 및 중형화물차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험중량이 1,305kg을 초과하는 소형 및 중형 화물차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7.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위 바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8.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WHSC모드, WHTC 모드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THC로 측정한다.
9.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암모니아(NH₃)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 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 및 비교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이륜자동차

가. 199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원동기	적용기간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 이후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원동기 형태	일산화 탄소	탄화 수소	질소 화합물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125cc 이하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1.10% 이하	4.0% 이하	0.70% 이하	50cc 미만	8.0g/km 이하	4.0g/km 이하	0.1g/km 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0% 이하					
125cc 초과 500cc 이하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5% 이하	50cc 이상	2행정	8.0g/km 이하	4.0g/km 이하	0.1g/km 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6% 이하	0.25% 이하					
500cc 초과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0% 이하	0.30% 이하		4행정	13.0g/ km이하	3.0g/km 이하	0.3g/km 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3.5% 이하	0.12% 이하	2.5% 이하	0.12% 이하					
측정방법		정 지 가 동						50cc 미만 CVS-47 / 50cc 이상 CVS-40				

※ 비교 :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나.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속도		최고속도 45km/h 이하			최고속도 45km/h 초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원동기	2행정	1.0g/km 이하	1.2g/km 이하	5.5g/km 이하	2.0g/km 이하	0.1g/km 이하	5.5g/km 이하	2.0g/km 이하	0.3g/km 이하	
	4행정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50cc 이상	2행정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150cc 미만	4행정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5.5g/km 이하	1.2g/km 이하	0.3g/km 이하	
150cc 이상	2행정			5.5g/km 이하	1.0g/km 이하	0.3g/km 이하	5.5g/km 이하	1.0g/km 이하	0.3g/km 이하	
	4행정			5.5g/km 이하	1.0g/km 이하	0.3g/km 이하	5.5g/km 이하	1.0g/km 이하	0.3g/km 이하	
측정방법		CVS-47			CVS-40					

※ 비교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배출가스	원동기	3륜 이상 자동차	최고속도 45km/h 이하	최고속도 45km/h 초과	
				150cc 미만	150cc 이상
일산화탄소		7.0g/km	1.0g/km	2.0g/km	2.0g/km
탄화수소		1.5g/km	-	0.8g/km	0.3g/km
질소산화물		0.4g/km	-	0.15g/km	0.15g/km
탄화수소+질소산화물		-	1.2g/km	-	-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CD

※ 비교

-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2행정 원동기로서 최고속도 45km/h를 초과하는 50cc 미만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구 분	기 준
일산화탄소	3.5g/km
탄화수소	1.5g/km
질소산화물	0.1g/km

-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는 0g/1주행을 적용한다.

4. 건설기계 원동기

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9.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8g/kWH 이하	KC1-8 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5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6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6g/kWH 이하	
130kW 이상 225kW 미만	5.0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54g/kWH 이하	
225kW 이상 560kW 미만	5.0g/kWH 이하	9.2g/kWH 이하	1.3g/kWH 이하	0.54g/kWH 이하	

※ 비교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30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NMHC(THC로 측정할 경우에는 THC 측정값에 0.98을 곱한 값을 NMHC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7.5g/kWH 이하	0.6g/kWH 이하	KC1-8 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0g/kWH 이하	7.5g/kWH 이하	0.4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6.6g/kWH 이하	0.3g/kWH 이하	
130kW 이상 225kW 미만	3.5g/kWH 이하	6.6g/kWH 이하	0.2g/kWH 이하	
225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6.4g/kWH 이하	0.2g/kWH 이하	

※ 비교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75kW 이상 130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3. 1의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고 위 표의 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7.5g/kWh 이하	0.3g/kWh 이하	ISO8178 C1-8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 이하	0.4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4.0g/kWh 이하	0.3g/kWh 이하	
130kW 이상 225kW 미만	3.5g/kWh 이하	4.0g/kWh 이하	0.2g/kWh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비교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엔진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9kW 이상 75kW 미만의 건설기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75kW 이상의 건설기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는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8kW 미만	8.0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NRSC모드 및 NRTC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	4.7g/kW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	0.19g/kWh 이하	0.4g/kWh 이하	0.025g/kWh 이하	

※ 비교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원동기를 장착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다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자가 동 엔진을 장착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할 수 있으며 동 건설기계는 2015년 9월 30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4. 19kW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TC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별표 34의2] <개정 2012.1.25>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1.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기계(자동차분야), 화공 및 세라믹, 환경 직무분야의 기사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비 고 : 휘발유 · 경유 · 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 · CNG ·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검사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사장비

1) 휘발유 · 경유 · 바이오디젤(BD100) 검사장비

순번	검 사 장 비	수량	비 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1식	
2	원자흡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식	
4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1ppm 이하 분석 가능
5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6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7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1식	
8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9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10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11	동점도시험기(Viscosity)	1식	
12	회분시험기(Furnace)	1식	
13	전산가시험기(Acid value)	1식	
14	산화안정도시험기(Oxidation stability)	1식	
15	세탄가측정기(Cetane number)	1식	
16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2) LPG·CNG·바이오가스 검사장비

순번	검 사 장 비	수량	비 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TCD, PFPD)	1식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5ppm 이하 분석 가능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1식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7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 비고 :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기계(자동차분야), 화공 및 세라믹, 환경 직무분야의 기사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비고 :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CN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사장비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배출가스 검사장비

순번	검 사 장 비	수량	비 고
1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2	배출가스 분석장치	2식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3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2식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4	자료처리 장치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5	그 밖의 부속장치	1식	휘발유, 경유 공용
6	원동기동력계	1식	경유 공용
7	매연 측정기	1식	경유 공용

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제1호나목 1)에서 정하는 검사장비

2) LPG · CNG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배출가스 검사장비

순번	검 사 장 비	수 량
1	차대동력계	1식
2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1식
3	배출가스 분석장치	1식
4	자료처리 장치	1식
5	그 밖의 부속장치	1식

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는 제1호나목 2)와 같고, 유해물질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

검 사 장 비	수 량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 비 고 : 휘발유용 · 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 · CN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촉매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기계(자동차분야), 화공 및 세라믹, 환경 직무분야의 기사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순번	검 사 장 비	수량	비 고
1	요소함량분석기(Total Nitrogen Analyzer)	1식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식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5	굴절계(Refractometer)	1식	Abbe 방식
6	자동적정기(Auto Titration) 또는 적정기(Titration)	1식	
7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1.17] [법률 제11190호, 2012.1.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 장치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 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收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2.6]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 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

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

-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들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제조자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서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내압용기제조자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제52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50조 [본조신설 2011.5.24]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 ②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7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1.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3.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4.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8. 제7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본조신설 2011.11.25]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 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3. 자금집행계획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1.25\]](#)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1.25\]](#)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5조(과징금의 부과, %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 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④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12.31>](#)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1.11.25>](#)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1.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1의2. 삭제<1999.7.29>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

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5호·제7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법 제44조의 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09.3.27>

③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1999.7.29>
16. 삭제<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1999.7.29>
20. 삭제<1999.7.29>
21. 삭제<1999.7.29>
22. 삭제<1999.7.29>

23. 삭제<1999.7.29>
 24. 삭제<2011.11.25>
 25. 삭제<1999.7.29>
 26. 삭제<1999.7.29>
 27. 삭제<1999.7.29>
 28. 삭제<1999.7.29>
 29. 삭제<1999.7.29>
 30. 삭제<1999.7.29>
 31. 삭제<1999.7.29>
 32. 삭제<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27>
-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 ② 삭제<2002.12.3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2008.9.25, 2010.2.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1999.7.29, 2010.2.5>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2010.2.5>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8.9.25>
-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1.11.25>
 -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별표 1] <개정 2011.11.2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I.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 징 금 액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자동차 검사대행자	택시미터 전문검정기
1.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50	100	관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100
	법 제47조제5항제4호			100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150	200	200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3.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00		

II.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 징 금 액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1. 거짓으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300	
2.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50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100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	100	50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50	300	150
5.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	100	50
6.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200	300	200
7.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50	300	150
8.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사업장의 전부 나. 사업장의 일부	법 제66조제1항제7호	20	100	50
	법 제66조제1항제7호	100	200	100
9.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	100	50
10.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200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200	

12.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 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100
13.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300
14. 법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20	30	
1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마목	20		
1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30	
1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50	50
18.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50	100	20
19.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III.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2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징 금 액
1.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해당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3.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3호	

※ 비 고 : 매출액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 판매 개수(대수)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각각의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2] <개정 2011.11.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태료(금액 :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호·제5호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50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가) 10일 이내인 때		5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	5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3호	10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4호	30
마.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제1호	30
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5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0
아.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6호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5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자.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7호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5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10
차.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8호	
1) 자동차의 경우		5
2) 이륜자동차의 경우		2
카.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9호	100
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0호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파.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1호	
1)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0일 이내인 경우		5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2) 목적을 위반한 경우		1
3)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
		10
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2호	
1)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3호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		100
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30
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5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3
너.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4호	100
더.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	100
러.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3호	50
머.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5호의2	10
버.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100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30
서.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500
어.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4호	
1)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1
2)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
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
처.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6호	10
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7호	
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00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30 1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8호	50
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3)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2 6 10
허.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 우	법 제84조제3항제2호	20
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 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7호	30
노.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 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제19호	20 3
도.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 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0호	100
로.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1호	100 10
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 우	법 제84조제2항제22호	30
보. 법 제5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 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3호	70 35
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 우	법 제84조제3항제8호	20

※ 비 고

- 위 표 야목, 자목1) 및 커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50만원으로, 바목, 어목 및 저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 위반행위가 가목2) 및 파목1)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파목1) 및 하목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목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참고 사항

대상자동차 및 시행시기

기간	2012년 1월 1일 ~ 5월 24일	2012년 5월 25일 ~ 12월 31일
지역	서울시	전국
차종	전차종	
대상 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비사업용 승합·화물차> - 2003년, 2006년, 2009년 등록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2년 1월~5월인 CNG자동차 - 2003년 이전 등록된 차량연장 임시검사 대상 CNG자동차(1회만 수검) <비사업용승용차> - 2000년, 2004년, 2008년 등록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2년 1월~5월인 CNG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비사업용 승합·화물차> - 2003년, 2006년, 2009년 등록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2년 6월~12월인 CNG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중 2003년 이전 등록된 차량연장 임시 검사대상 자동차(1회만 수검) <비사업용승용차> - 2000년, 2004년, 2008년 등록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2년 6월~12월인 CNG자동차

검사수수료

용기수	수수료(원)	용기수	수수료(원)
1개	87,000	6개	539,000
2개	188,000	7개	628,000
3개	274,000	8개	717,000
4개	360,000	9개 이상	806,000
5개	449,000		
불합격수수료	용기	1개당 22,000원	
	용기 이외	전체 22,000원	
특기사항	- 200L를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2개분 수수료 청구 - 전산 예약결제시 3,000원 감면(불합격 재검사 제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0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들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천연가스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CODE에 의한 기준을 만족해야 함.

①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관련 기준

분 야	코드 번호	규 드 명
그밖의 특정설비	KGS AA915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복합재료용기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자동차 충전	KGS FP651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652	이동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P653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저장 및 사용 (안전성평가기준 포함)	KGS FU552	압축천연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553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②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관련 기준

분 야	코드 번호	규 드 명
복합재료용기	KGS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자동차 충전	KGS FP654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저장 및 사용(안전성평가기준 포함)	KGS FU554	액화천연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CNG 자동차 연료장치 관련 검사규정으로는 CNG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KGS-CODE인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KGS FU552(압축천연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으로 자동차 완성검사를 용기부속품의 경우에는 KGS AA311(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용기부속품을 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59호, 2011.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6] [지식경제부령 제238호, 2012.1.26, 일부개정]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7.28>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별표 6의 2] <개정 2011.11.4>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의 기준
(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독 설치 등 액화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 ~ 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 ~ 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 ~ 4만 이하	27m	18m
4만 초과 ~ 5만 이하	30m	20m
5만 초과 ~ 99만 이하	30m[「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이하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라 한다)는]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 비 고 : 1. 이 표에서 저장능력(w)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q = (10p + 1) \times v1$$

$$w = 0.9d \times v2$$

위 계산식에서 q, p, v1, w, d 및 v2는 각각 다음과 같다.

q : 압축도시가스 저장능력(단위 : m³)

p : 35℃에서의 최고충전압력(단위 : MPa)

v1 : 내용적(단위 : m³)

w : 액화도시가스 저장능력(단위 : kg)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의 비중(단위 : kg/L)

v2: 내용적(단위 : L)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 라)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액화산방지시설에 설치된 처리설비는 제외한다)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 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 마)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바)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2) 기초 기준
- 저장설비·압축가스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m 또는 1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 3) 저장설비 기준
-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도시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 또는 500^m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탱크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5^m 이상의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 나) 저장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m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 해당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에서의 도시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4) 가스설비 기준
- 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해당 도시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 나)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다)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것
- 라) 가스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압축장치·기화장치 및 고정식펌프 등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5) 배관설비 기준
- 가) 배관의 재료는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 나) 배관은 안전율이 4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 다)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라) 사업소에 설치하는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마) 배관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6) 사고예방설비 기준
- 가)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의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가스충전시설에는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라) 압축가스설비의 인입배관 및 압축장치의 입구측 배관 등 위험성이 높은 도시가스 설비 사이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마) 가스충전시설에는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바)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사)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조정기·압력계·통신시설·전기방폭설비·냄새가나는 물질 첨가장치·소화기·호스·조명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 기준

- 가) 저장설비와 사업소의 보호시설과의 사이,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나)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표시 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9) 그 밖의 기준

- 가)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 기준

- 가) 가스충전시설 중 진동이 심한 곳에 설치되는 고압의 가스설비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나) 도시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MPa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개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 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 라)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발화성의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 마) 도시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않을 것
- 바) 사업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출 것

2) 충전 기준

- 가) 자동차에 압축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 나) 이동충전차량의 용기 및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설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으며, 용기의 사용압력

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다) 충전을 마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경우에는 충전호스 안의 도시가스를 제거할 것

3) 점검 기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수리 및 청소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 사 항 목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 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4) 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5) 라)(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5) 마)(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규정된 항목(1) 나), 1) 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상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가스누출 감지경보장치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⑤ 강제환기시설 ⑥ 안전제어장치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하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가. 시설기준

- 1)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 2) 가스배관구(이동충전차량의 압축도시가스를 충전설비로 이입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에 설치한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가스배관구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임야·논밭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다만, 임야·전답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외부에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 4) 사업소에서 주정차 또는 충전작업을 하는 이동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3대 이하로 하고, 이동충전차량 보유수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5) 이동충전차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용기에는 그 설비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6)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7) 집합용기에 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8)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9)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10)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가)·1)나)·1)라)·1)마)·1)바)·2)·3)가)·3)나)·3)다)·6)가)·6)라)·6)바)·7)가)·7)나)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의 기준 중 “압축가스설비”를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나. 기술 기준

- 1)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 2)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 3)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 사 항 목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5) 다)(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5) 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②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및 3)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 나), 1) 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⑤ 강제환기시설 ⑥ 안전제어장치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가. 시설 기준

-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수량이 1을 더한 수량의 이동충전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가스충전시설에는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근처 및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압축장치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하여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이동충전차량의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에는 그 설비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이동충전차량 충전장소에는 지면에 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의 방향을 표시할 것
- 그 밖에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 기준



- 1)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 2)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 3) 이동충전차량의 사업소 외에서 이동충전차량에 충전을 하지 말 것
- 4)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자동차”는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 사 항 목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 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1) 라)(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4) 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5) 다)(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5) 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②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및 4)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 나), 1) 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가스누출 감지경보장치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⑤ 강제환기시설 ⑥ 안전제어장치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가. 시설 기준

- 1)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저장탱크의 저장능력(w)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25톤 이하	10m
25톤 초과 50톤 이하	15m
50톤 초과 100톤 이하	25m
100톤 초과	40m

※ 비 고 : 1. 이 표의 저장능력(w)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w = 0.9d \times v$$

w :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kg)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 비중(단위 : kg/L)

v : 저장탱크의 내용적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방류독이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방류독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 3)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 4)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5) 그 밖에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라), 5)나), 6)라), 6)사), 7)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1)나)의 “저장설비” 및 “저장능력”은 각각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로, “1일간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 보고,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제1호가목1)나)의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나. 기술 기준

1) 안전유지 기준

- 가) 가스설비의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과 같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 나)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다)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000L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차량 정지목 등으로 고정할 것
- 마)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가스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의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등을 확보할 것

- 사)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아) 충전기앞(옆)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을 표시할 것
- 자)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도시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 차)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 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 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충전 기준

- 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도시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입을 한 후에는 그 배관에 남아 있는 액화도시가스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나)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유해한 양의 수분 및 유화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다) 액화도시가스의 충전이 끝난 후에는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액화도시가스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할 것
- 라) 저장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도시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을 것
- 마)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 바) 충전설비에서 도시가스충전작업을 할 때에는 그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 사)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기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3) 점검 기준

- 가) 슬립류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 나) 충전설비는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에 반드시 그 충전설비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 라)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조건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4) 수리 및 청소 기준

- 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 기준

-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 사 항 목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 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 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4) 마)(가스설비의 설치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5) 라)(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5) 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②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상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가스누출 감지경보장치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⑤ 강제환기시설 ⑥ 안전제어장치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 항목에 적합하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5.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

이 기준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시설기준

-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의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액화도시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차량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고, 2대의 차량이 진입,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
-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 5)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 6) 긴급사태가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충전작업 전·중·후의 작업상황을 선박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구축할 것
- 7)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

나. 기술 기준

- 1)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할 것
- 2) 충전작업 전에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 3) 충전작업 전에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를 할 것
- 4)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받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할 것
- 5) 충전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
- 6) 충전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 7)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제4호 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자동차 용기”는 “선박 용기 또는 탱크”로 보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는 “액화도시가스 선박”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 사 항 목
가) 완성검사	가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① 가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 및 다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그 밖의 기준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 6. 그 밖의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도시가스충전소 건설 및 인허가 절차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1. 도시가스 충전소 건설 절차

1) 부지선정

- 충전소 입지 분석
- 충전소 허가여부 검토
- 관련법규 저촉여부 확인 작업
- 부지매입

2) CNG충전소 사업허가

- 지질조사 업체 선정
- 기술검토(가스안전공사)
- 교통영향 평가(교평업체)
- CNG 충전사업허가(관할 시·군·구청)

3) 건축허가

- 건축허가(관할 시·군·구청)
- 건설업체 선정 및 착공

4) 충전소 시공

- 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총4회)
- 건축물 및 CNG충전소 설비시공

5) 충전소 준공, 건물 준공

- 건축물 준공 검사
- 가스안전공사 완성 검사
- 취득세 납부, 보존 등기
- 사업자등록 신고(영업개시 20일전)
- 도시가스사로부터 가스 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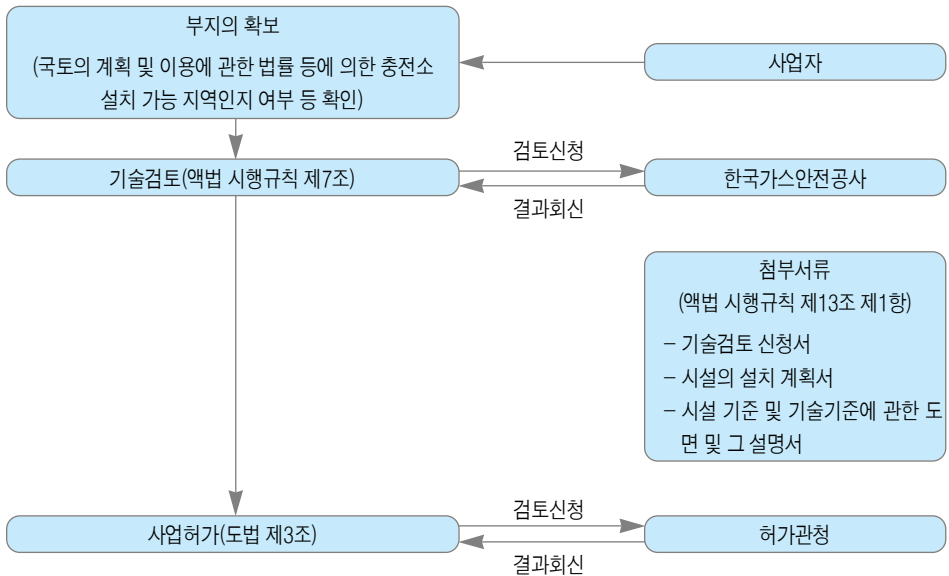
6) 충전소 영업개시

- 충전설비 시운전
- 충전원 모집 및 교육
- 영업개시

<참고사항>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건축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별히 허가 관청에서 정한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전소 허가 시에는 반드시 허가 관청에 도법 및 타법관련사항 등을 문의하면서 업무진행을 요함.

2. 도시가스 충전시설 허가 절차



첨부서류(도법 시행규칙 제3조)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 기술 검토서

허가의 기준(법 제3조의2)

-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의 결격사유(도법 제4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부지확보 시 유의 사항

- 충전시설 부지 확보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법령과 허가 관청에서 충전시설 허가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와 충전시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 <시행령 제 71조>

설치금지 구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내버스 차고지에만 설치 가능한 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가능한 지역	설치 가능한 지역
전용주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 상업지역	보전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생산녹지지역

3. 그린벨트 내 충전소 건설 절차

1) 기본설계 확정

- 그린벨트 내 차량동선을 고려한 전체 배치 검토(충전시설 포함)
- 건축설계, 토목설계 및 가스법규에 따른 기본 설계확정

2) 기술검토서

- 지질조사
- 기술검토서 작성 및 승인(한국가스안전공사 접수 후 15일 이내)

3) 제조허가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에 신청
※ 건축인허가와 통합민원으로 요구하는 행정관청도 있고 별개로 진행하는 행정관청도 있음

4) 건축인허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으로 구성
- 지적측량 선행이 필요(지질조사업체 선정)
-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병행(지장물 파악)

5) 건축 및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 건축허가서 : 소정양식으로 행정프로그램 전산입력(설계사무소)후 프린트하여 직인 날인 후 제출(절수설비 계획서 첨부)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 우수처리시설(또는 단독 정화조) 설치 신고서
- 소방 설비 설치 계획표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공작물 적치 및 토지 형질 변경 시)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피해방지 계획서(개발행위의 경우)
- 공작물 축조 신고서 ● 도로점용 허가서(필요시)
-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확약서(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음)
- 상수도 인입계획서(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음)

6) 관청에서 건축허가서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수령

- 면허세
- 채권 등 납부(농지 조성비,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교통채권 등 납부)

7) 착공계 제출

- 건축물 착공계
 - 소정양식(건축착승은 발주처 직영가능)
 - 설계감리 계약서
 - 배수계약서
- 비산 먼지 발생신고서
-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 토지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 착공계 : 소정 양식
 - 건설업 등록증(사본 : 원본 대조필)
 - 건설업 등록수첩(사본 : 원본 대조필)
 -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본 대조필)
 - 인감증명(원본)
 - 공사도급계약서(사본 : 원본 대조필)
 -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의 재직증명서
 - 현장대리인의 갑근세납세필증
 - 현장대리인의 자격증사본
 - 형질변경공사 공정표
 - 현장상황 사진
- 토지형질공사의 경우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 공사비 산정 확인
 - 보증보험증권 제출

8) 사용허가 및 지목변경 신청서

9) 건축물 대장 등재

10)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 자신신고

4. 도시가스충전소 허가 관련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0.1.27>

⑤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신설 2010.1.27>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시공 감리 등)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1.27>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9.25, 2010.7.28>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0.7.28, 2011.11.4>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5.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제2항제4호에 따른 선박에 충전하는 사업

제3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28>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6.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
7.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⑥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7.28>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25, 2010.7.28>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8, 2011.11.4>

1.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21조제



- 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관리한 것일 것
 - 3. 시공내용이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
-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

5. 도시가스 충전소 시공사 안내 (허가절차 대행 등 포함)

1) 시공사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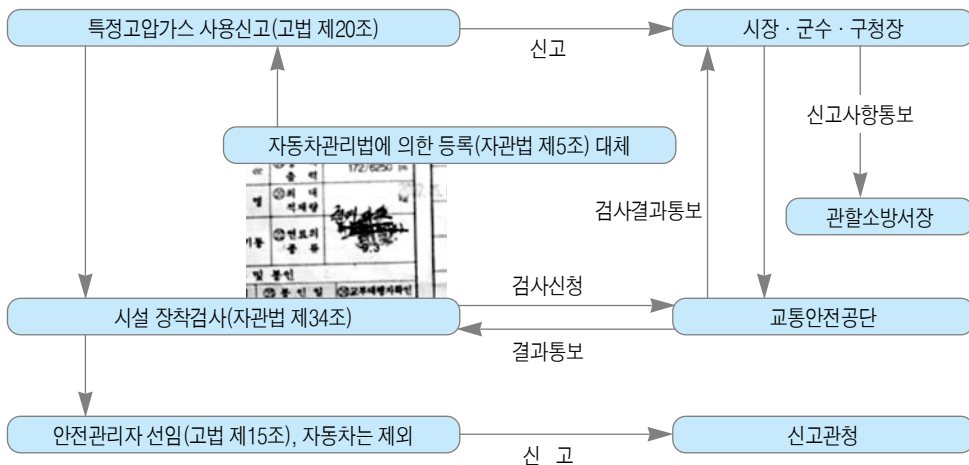
회 사 명	홈페이지	상담 및 문의전화	비 고
· 엔텍아이(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www.ntech-i.com	02-2668-3460	· 천연가스충전협회 회원사 (특별회원)
· 정동종합건설(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소재)	www.jdco.kr	010-3602-4677	· LCNG충전소 시공 경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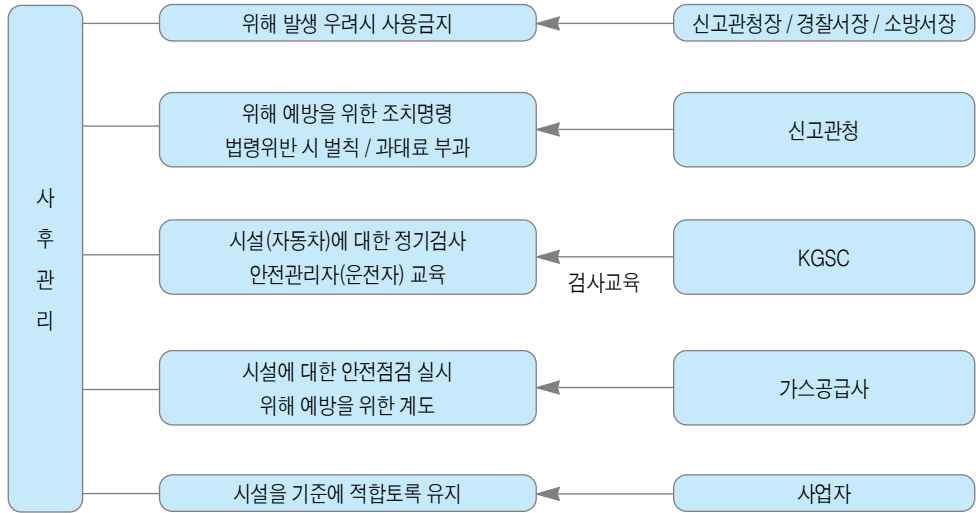
※ 우선 확인된 사업장에 한하여만 게시한 것임.

NGV용 용기 관련 기준

구분	자동차	총전소	부품제조
사전관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구조변경 등록)	기술검토(KGSC)	기술검토(KGSC)
		허가(시군구청장)	사업등록(시도지사)
검사	장착검사(교통안전공단)	완성검사(KGSC)	완성검사(KGSC)
사후관리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 제정※	안전관리규정 제정※
	사용자 교육 등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 / 수시 검사	제품 검사
		보험 가입	보험 가입
비고	개조, 제조	안전관리자 교육 등	안전관리자 교육
			밸브, CNG 용기

주) ※ : 사업개시 이전.





1.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법규

1) 천연가스자동차 개조 자격(개조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2) 천연가스자동차 운행 자격(사용자)

불특정 개인, 단체, 사업자 등 운행 가능

※ LPG 자동차의 경우 : 운수사업용, 관공서용 등 특정 사용자 액법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3) 고압가스 연료장치 제조(개조) 및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6,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

※ 연료용기, 밸브, 연료장치의 성능 및 기능에 관한 규정

※ LNG자동차의 경우는 별표 7,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

4) 천연가스자동차의 구조 변경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한 신규검사 및 구조 변경 검사

※ 승인 내용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15의 신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

2. NGV용 용기 및 밸브 관련 검사

1) 신규검사

- ① 관련조항: 법 제17조
- ② 대상: 제조·수리·수입한 것들(용기(3dℓ이상), 냉동기(3RT를 이상), 특정설비 등)
 - ※ 수리한 것 중 부품 교체 및 단열재 교체는 검사대상에서 제외(영 제15조)
- ③ 기준: 밸브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용기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④ 벌칙: 미수검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0조)
- ⑤ 절차
 - 가) 밸브: 제품검사(합격: 합격각인, 불합격: 파기)
 - 나) 용기: 제품검사(합격: 합격필증/각인, 불합격: 파기)
 - 다) 특정설비: 제품검사 → (합격: 합격각인, 불합격: 수리, 수리불가로 불합격시: 파기)
 - 라) 냉동기: 제품검사(합격: 합격각인)
- ⑥ NGV용 용기 및 밸브 관련 검사 검사생략[전부생략]
 -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 나)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 다)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라)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중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마)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바)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사) 소화기에 내장된 것
 - 아) 고압가스수입용의 외국인 소유 용기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등 자동차의 경우 고법시행령 별표1.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15.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하는 고압가스 연료용 차량 안의 고압가스

※ 일부생략

가) KS 표시허가를 받은 것

나) 그 밖의 용도로 수입하는 것

2) 재검사

① 관련조항: 법 제17조 제2항

② 대상: 용기·특정설비

재검사기간의 경과

손상의 발생

합격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기준: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CNG 자동차용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과 기준에 따라 재검사
(2011.7.1)

④ 절차: 신규검사에 준하는 검사항목 선정(외관검사, 내시경검사, 내압검사 등)

3) 미검 용기의 사용금지

신규검사·재검사 미필용기등의 양도·사용·판매를 위한 진열금지(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 제40조>

4) 용기 및 밸브의 재검사기간

- 용기: 매 36개월 또는 3만km(국토해양부 제정.2011.7.1)

- 용기밸브: 차령기간

2012 NGV 연감

더 맑게 더 푸르게 깨끗한 세상

초판 1쇄 인쇄 | 2012년 4월 13일

초판 1쇄 발행 | 2012년 4월 30일

발행처 |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발행인 |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회장 직무대행 배영태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전화 | 070-7729-3661~5

팩스 | 02-3663-3616

홈페이지 | <http://www.kangv.org>

기획 | 에너지신문(02-523-6611)

디자인 | 디자인명상

출력·인쇄 | (주)제일CTS

·비매품

·저작권법에 의해 이 책 내용은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